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II. 검토의견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등¹⁾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²⁾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 4. (생략)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³⁾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와 관련,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한 바 있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⁴⁾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금지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2022. 2. 24. 2020헌가5] (결정요지 일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